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2. 23 선고 2020가단78008 판결 [공사대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1385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2. 23 선고 2020가단78008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곽현준, 김정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은해

피 고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명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준성

변 론 종 결 2020. 11. 4.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영위하고자 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불가항력으로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15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 해제권을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27.경 100,000,000원, 2017. 11. 29.경 23,000,000원 등 합계 123,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행위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고흥군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2017. 6. 27.경 ‘고흥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시행하였는데(개정된 위 조례를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이 사건 조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한다.

다만,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과 신청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지형지물 등이 있어 경관 훼손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중 면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관광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35조, 건축법 제11조 내지 14조 및 전기사업법 제7조1)에 따라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전기사업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례가 2017. 6. 27.경 개정시행됨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제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보다 강화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부지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행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례의 개정시행으로 이 사건 사업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 이 사건 조례의 부칙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이 사건 조례의 시행 당시 사업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례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함이 그 주된 취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부칙조항을 가능한 유연하게 해석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기대권과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m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부칙조항에 규정된 ‘모든’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절차 등이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이 사건 조례의 소급적용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위 부칙조항을 지나치게 문리적으로만 해석한 결과로서 타당하지 않은 점, m 위 부칙조항의 관련법령들 중 예컨대,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등은 애시당초 규율하는 사업부지나 대상이 상이한 바, 이점에서도 ‘모든’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절차 등이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이 사건 조례의 소급적용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점, m 피고는 이 사건 조례의 개정시행 전인 2016. 12. 23.경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이는 위 부칙조항에서 정한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절차 중의 하나인 점, m 더군다나, 이 사건 조례 제18조의2 제1항은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과 신청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지형지물 등이 있어 경관 훼손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설령 이 사건 부지가 도로 또는 주거 밀집지역에 인접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의 고충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조례의 개정시행으로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봉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35조, 건축법 제11조 내지 14조 및 전기사업법 제7조를 이하
통틀어 ‘관련법령’이라 한다.